

7. 建設交通部 民資誘置業務 處理要領

建設交通部 告示 第1995-175號 1995. 5.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민자유치기본계획(이하 각각 “법·령 및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중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시설을 말한다.

2. “주무부서”라 함은 해당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을 포함한다) 및 철도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기본계획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제4조(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교통부에 건설교통관련시설 민자유치 업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경과조치적용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8.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및 중요한 사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건설교통부차관과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건설지원실장, 수송정책실장과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내 민자유치업무 총괄하는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요령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민자유치사업 전문평가인단 및 사업별 평가단

제7조(민자유치 전문평가인단 설치) ①국토개발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에 각각 민자유치 전문평가인단(이하 “평가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국토개발연구원에 설치되는 평가인단은 건설교통관련시설중 도로 및 도로부속물,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도시공원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

원에 설치되는 평가인단은 기타의 건설교통관련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인단 구성) ①평가인단은 국토개발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의 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평가인단 단장이 지정한 건설교통관련시설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평가인단 단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인단 구성원의 추가·교체등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별 평가단) ①평가인단 단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단 중에서 평가분야별로 적정수의 사업별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사업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중에서 평가인단 단장이 지정한다.

②평가단은 평가단계별로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③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장은 평가위원중 일부에 대해 평가지원업무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및 심의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자유치대상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금융기관, 회계·법률·설계전문가 등에게 연구를 의뢰하거나, 전문작업반 구성을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세부작성 지침을 마련 배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의 목차, 항목별 작성기준, 양식, 분량 등
2.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사업계획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4. 기타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민자유치사업이 다른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연계되어 조기시행이 요구되는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최소자격기준 마련)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내용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의뢰)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관련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제11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평가인단 단장에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단 평가) ①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의뢰를 받은 평가인단 단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사업계획서 세부작성지침상 명시된 평가단계 및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에 따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

업계획서를 작성한 자로 하여금 1회이상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1회이상 평가단에게 관련 국가정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평가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것과 평가결과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기간중에는 단장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과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평가인단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의뢰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평가결과의 집계 또는 공개시기는 주무부서의 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평가요소 및 가중치의 공정성 확보) ①주무부서의 장은 평가요소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평가인단 단장의 자문을 받아 세부 평가요소를 정하거나 요소별 가중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평가인단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날
부터 40일이내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 사업별 평가요소와 그 가중치
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5조(시·도의견 반영) 주무부서의 장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민자유치사업에 대
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단장에게
통보하여 평가업무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처리) ①주무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과정
에 증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최대한 존중하
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의 평가단
의 평가과정에서 증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평가인단 단장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부실공사 방지 및 성실이행 보장 조치

제17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52조 및 기본계획에 의한 건설기
술심의위원회 사전심사와 책임감리실시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 및 사업이행보장) ①주무부
서의 장은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중
사업시행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투자확약서를 차입분에 대하
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사업시행
자지정 조건부등 포함)를 사업계획서
제출시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성실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게 총사업비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제3자의 연
대보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중 이
행보증비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중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
증금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전예고 등) ①주무부서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
공사방지대책과 투자 및 사업이행보장
내용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예고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부실공사방지대책과 투자 및 사업이행
보장 내용등을 당사자간 상호협약사항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감독) ①주무부서의 장은 관

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준공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감독을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민간제안사업 및 경과조치 적용사업

제21조(민간부문 제안사업)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에 의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 : 시설수요전망, 시설운영계획, 재원조달대책
2. 대상사업투자소요 : 시설별·요소별 투자금액 산출내역
3. 건설기간 : 행정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정별 소요기간으로 세분
4. 예정지역 및 규모 : 군단위 이하의 예정지역, 시설별 소요면적, 도면 등
5. 투자효과 : 시설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경제 또는 국민편의증대효과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기한을 정하

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 제3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안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서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경과조치 적용사업 심사) ①주무부서의 장은 이 요령 시행일 현재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부칙 제2항과 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영 제9조에 의한 사업계획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실시계획 포함)과 경과조치 적용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유 및 그 조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경과조치 적용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평가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경과조치 적용사업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필요예산확보 등

제23조(필요예산 확보) ①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비용, 신문광고비용, 위촉심사위원 및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개발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은 평가인단 및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 제출자 또는 선정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자유치사업 심사 평가관련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민자유치 기본계획 작성)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송정책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송정책실장은 주무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기본계획안을 마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 안건상정) ①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 15부를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이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해 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6조(서식 등) 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서식 :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설치하는 평가인단에서 평가 및 자문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